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2070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0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19. 10. 0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19. 10. 1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이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고성군으로 출연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준비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출연의 법적 근거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나. 경상남도 조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4.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비영리공공기관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에 목적을 둠

5. 신용보증 지원방법

가. 고성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나.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6.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및 손실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추정)	'20년(추정)
보증공급	8,491	9,388	10,201	10,000	10,000
사고금액	313	342	448	527	607
대위변제 (재보증 포함)	168.5	209.7	310.0	364	410
대손발생액	△26.4	△71.5	△127.5	△214	△236
출연금 (도/시군/기타)	131.2 (37.6/14/79.6)	94.6 (10/18.5/66.1)	151.5 (10/25/116.5)	173.5 (30/37/106.5)	210 (50/51/109)

7. 우리군 출연 및 보증현황

(19.5.31기준, 단위 : 억원, 건)

구분	우리군 출연금			'18. 道정책자금		총 보증잔액			대위변제액		
	'18년	'19년	'20년	이용액	건수	'17년	'18년	증감	'17년	'18년	증감
고성	1	1	1.5	3	15	137	159	22	4	4	0

※ 시·군 출연(억원) : 창원(11)·김해(5.5)·진주(4), 양산(3.5), 거제(3.5), 통영(3)·사천(2.5) · 밀양(2)·함안(2.5)·거창(2.5)·창녕(1.5)·남해(1.5)·산청(1.5)·함양(1) 하동(1.5)·합천(1.5)·의령(1)

8. 2020년도 출연금 계획: 금150,000천원

※ 2019년도 대비 50,000천원 증가

9. 관련 법규 발췌문 : 붙임 참조

10.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출연 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출연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1.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12. 토 론 : 없음.

13. 심사결과

- 2019. 10.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